

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5. 9. 7.

제안자 : 김홍운의원 외

□ 수정 이유

-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사업계획 수립 등의 자문에 응하는 기술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고,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규정을 신설하며,
- 아울러 조례안 체계나 문구사용에 있어 불합리적이거나 의미전달이 애매모호한 불명확한 조문 등은 보다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는 문구 등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하고자 함.

□ 수정 주요내용

- 공사의 자본금과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를 2개조문으로 분리
 - 안 제4조제4항을 제5조로 하며, 조의 제목은 (출자)로 함.
 - 안 제5조내지 제49조를 제6조내지 제50조로 함.
 - 안 제5조제4항중 "5,000원"을 "10,000원"으로 하고, 동조 제5항중 "4,000만주"를 "2,000만주"로 함.
- 안 제20조의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기술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고, 업무와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을 두도록 함
 -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함.
제20조(비밀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 등) ①공사의 임·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공사의 임·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.
- 안 제46조제1항중 "그 소속공무원"을 "관계공무원"으로 함.

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4항을 제5조로 하며, 조의 제목은 (출자)로 한다.

안 제5조내지 제49조를 제6조내지 제50조로 한다.

안 제5조제4항중 “5,000원”을 “10,000원”으로 하고, 동조 제5항중 “4,000만주”를 “2,000만주”로 한다.

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비밀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 등) ①공사의 임·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공사의 임·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.

안 제46조제1항중 “그 소속공무원”을 “관계공무원”으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자본금) ①(생략) ②(생략) ③(생략) ④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.</p> <p>(신설)</p> <p>제5조(주식의 발행) ①(생략) ②(생략) ③(생략) ④공사가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은 5,000원으로 한다.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,000만주로 한다.</p> <p>제6조(생략) 제7조(생략) 제8조(생략) 제9조(생략)</p>	<p>제4조(자본금) ①(제정안과 같음) ②(제정안과 같음) ③(제정안과 같음) (삭제)</p> <p>제5조(출자) <u>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주식의 발행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(제정안과 같음) ③(제정안과 같음) ④----- <u>10,000원</u>----- ⑤----- <u>2,000만주</u>----</p> <p>제7조(제정안과 같음) 제8조(제정안과 같음) 제9조(제정안과 같음) 제10조(제정안과 같음)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10조(생략)</u> <u>제11조(생략)</u> <u>제12조(생략)</u> <u>제13조(생략)</u> <u>제14조(생략)</u> <u>제15조(생략)</u> <u>제16조(생략)</u> <u>제17조(생략)</u> <u>제18조(생략)</u> <u>제19조(생략)</u></p>	<p><u>제11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12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13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14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15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16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17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18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19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20조(제정안과 같음)</u></p>
<p><u>제20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<u>(신설)</u></p>	<p><u>제21조(비밀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 등)</u> <u>①공사의 임·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<u>②공사의 임·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.</u></p>
<p><u>제21조(생략)</u> <u>제22조(생략)</u> <u>제23조(생략)</u> <u>제24조(생략)</u> <u>제25조(생략)</u> <u>제26조(생략)</u> <u>제27조(생략)</u> <u>제28조(생략)</u> <u>제29조(생략)</u> <u>제30조(생략)</u> <u>제31조(생략)</u> <u>제32조(생략)</u> <u>제33조(생략)</u> <u>제34조(생략)</u> <u>제35조(생략)</u></p>	<p><u>제22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23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24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25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26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27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28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29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30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31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32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33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34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35조(제정안과 같음)</u> <u>제36조(제정안과 같음)</u>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36조</u>(생략) <u>제37조</u>(생략) <u>제38조</u>(생략) <u>제39조</u>(생략) <u>제40조</u>(생략) <u>제41조</u>(생략) <u>제42조</u>(생략) <u>제43조</u>(생략) <u>제44조</u>(생략) <u>제45조</u>(생략)</p> <p><u>제46조</u>(공무원의 파견·겸임) ①도지사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그 소속공무원을</u>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②(생략)</p> <p><u>제47조</u>(생략) <u>제48조</u>(생략) <u>제49조</u>(생략)</p>	<p><u>제37조</u>(제정안과 같음) <u>제38조</u>(제정안과 같음) <u>제39조</u>(제정안과 같음) <u>제40조</u>(제정안과 같음) <u>제41조</u>(제정안과 같음) <u>제42조</u>(제정안과 같음) <u>제43조</u>(제정안과 같음) <u>제44조</u>(제정안과 같음) <u>제45조</u>(제정안과 같음) <u>제46조</u>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47조</u> ①----- ----- ----- 관계공무원을 ---- -----</p> <p>②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48조</u>(제정안과 같음) <u>제49조</u>(제정안과 같음) <u>제50조</u>(제정안과 같음)</p>